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(약칭: 데이터산업법 시행규칙 🛱

[시행 2023. 1. 3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2호, 2023. 1. 3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데이터진흥과) 044-202-6291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)** ①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 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 -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- 제3조(가치평가의 신청)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- 제4조(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) ①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- **제4조의2(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)**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(이하 "데이터 품질인증기관"이라 한다)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.
 - 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. 3.]

- 제4조의3(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)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.
 - 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.
 - 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.

[본조신설 2023. 1. 3.]

- **제5조(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)**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 -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
- **제6조(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)**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.
 -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<제102호,2023. 1. 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